

개호보험

○개호보험제도란

우리들이 나이를 먹으면 필요하게 될 개호를 가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지원해 가고자 하는 새로운 조직이 개호보험제도입니다.

이 제도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충당합니다.

목욕, 배설, 식사 등의 일상생활에 개호가 필요할 때, 니시노미야시로부터 개호의 필요도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면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(집에서 개호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지급한도액 범위내)

○피보험자

65 세 이상의 시민과 40~64 세로 의료보험(국민건강보험, 건강보험 등)에 가입한 시민전원입니다.

·제 1 호 피보험자 : 65 세 이상의 시민전원

·제 2 호 피보험자 : 40~64 세로 의료보험에 가입한 시민전원

제 1 호피보험자와 제 2 호피보험자는 보험료 부담방법이나 서비스를 받는 조건 등이 각각 다릅니다.

산정 관련 문의처 니시노미야시청 고령자개호과 0798-35-3313

○보험료

제 1 호피보험자와 제 2 호피보험자는 보험료에 관한 문의처가 각각 다릅니다.

납부 관련 문의처

제 1 호피보험자에 대해서는

니시노미야시청 고령자개호과 0798-35-3148

제 2 호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자

○개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

(1) 어떤 때

65 세 이상으로 개호(간병)가 필요한 경우 또는 40~64 세로 노화에 따른 심신 변화에 기인하는 특정질병(파킨슨병 등 16 종류)으로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2) 요개호인정

개호보험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청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개호의 필요도에 대해 '요개호인정'을 받아야 합니다. 신청을 하고 인정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해당 조사내용과 의사 소견서를 근거로 개호인정심사회에서 개호필요도를 판정합니다. (요지원 1~2, 요개호 1~5 의 7 단계)

(3) 케어플랜작성

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요개호 1~5 의 대상자는 재택개호지원사업자의 개호지원전문원(케어매니저)에게, 요지원 1,2 의 대상자는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재택서비스계획(케어플랜)의 작성을 의뢰하여 그 계획에 근거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문의처	요개호인정 신청 등	고령자개호과 인정상담팀	0798-35-3133, 3348
	개호보험서비스의 내용 등	고령자개호과 급여·적정화팀	0798-35-3048

※ 주 자세한 사항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과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